이 예시는 가상의 사안입니다. 인물, 날짜, 장소 및 사건번호는 모두 가상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진술서(참고인)

사　　건　　○○경찰서 2026-○○○○○○호 폭행

피 의 자　　○○○

진 술 인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로 ○○

010-○○○○-○○○○

[설명]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진술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스스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머리에 사건번호와 피의자를 기재하여 어느 사건에 관한 진술인지 특정합니다.

진술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다 음

1. 저는 ○○시 ○○구 ○○로 ○○에 있는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합니다)에서 2025. 9.부터 야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이하 '피의자'라 합니다)과 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은 모두 이 사건 편의점의 손님으로, 저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저는 두 사람 누구와도 친척 관계나 금전 거래가 없습니다.

[설명] 첫 항에서 진술인의 지위와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쓸 약칭을 정합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되므로 함께 기재합니다.

2. 저는 2026. 3. 14. 22:40경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소인이 맥주 2캔을 계산하던 중, 뒤에 서 있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빨리 좀 하라"고 말하였고, 고소인은 뒤를 돌아보며 "기다리세요"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계산대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3. 이어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한 차례 세게 밀었고, 고소인은 옆의 진열대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으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계산대 안에서 이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전에 고소인이 피의자를 밀거나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설명] 날짜와 시각, 진술인이 있던 위치, 거리 및 보고 들은 행위를 한 문장에 하나씩 기재합니다.

보지 못한 사실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합니다.

4. 저는 같은 날 22:45경 계산대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저는 그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그 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2026. 3. 16. 이 사건 편의점에 들른 고소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사실을 문장에서 구분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같은 요건(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으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되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진술인은 법정에서 진술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 위에는 매장 안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6. 3. 15. 점주 ○○○에게 위 시각의 영상을 보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점주는 영상을 따로 저장하여 두었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설명]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위치와 보존 여부를 기재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단서가 됩니다.

6. 이에 저는 2026. 3. 14. 22:4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밀어 고소인이 진열대에 부딪히며 넘어진 것을 제가 직접 보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맺음 항에는 진술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 다시 정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술인 신분증 사본 1부

2026. 4. 2.

진술인 ○○○ (인)

○○경찰서장 귀중

위 서식은 변호사 한동하가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서식은 일반적인 양식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된 자료와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후의 형사 관련법의 동향과 새로운 판결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